

## 패스트리테일링 그룹 사업파트너 정책

패스트리테일링 그룹(Fast Retailing Group, 이하 "FR그룹"이라 합니다)은 정말 좋은 옷을 만들어 전세계의 고객들에게 좋은 옷을 입는 기쁨을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옷의 개념에는 모든 비즈니스 활동의 측면에서 성실함을 유지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FR그룹은 우리와 이러한 사명을 공유하고, 적절한 근로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며, 고결한 정신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파트너와의 거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FR그룹과 모든 거래를 하거나 FR그룹을 대신하여 물품공급 또는 용역제공 거래를 하는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단, 이른바 FR그룹의 "생산파트너"를 제외합니다) 및 그 종업원, 대리인 내지 그 위탁처(직접·간접을 불문합니다. 이하 모두 합쳐서 "FR 사업파트너"라고 합니다)가 지켜야 하는 최소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 리걸 컴플라이언스

FR 사업파트너는 언제나 그 사업활동을 하는 국가에서 적용되는 모든 국가·지역의 법령, 법적 요구사항, 조약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합니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근로환경과 지속 가능성 실현을 위한 통일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FR그룹은 법령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와 법령 간 상이점이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반독점법, 독점금지법의 준수**

FR 사업파트너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반독점법 또는 독점금지법을 준수합니다.

- **무역 관련 법령 준수**

FR 사업파트너는 적용 가능한 모든 무역통제, 수출·재수출·수입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 **뇌물과 부정의 금지**

FR 사업파트너는 고결함을 유지하면서 법령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FR 사업파트너는 영업상 부적절한 이득이나 이익을 얻거나 이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어떠한 것도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제 3 자에게

제공(제공의 합의 또는 제안 포함)하거나, 이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공무원의 개념에는 공무원(정부 소유 기관 혹은 공기업 직원 포함), 공선된 자, 정당 관계자가 포함됩니다.

## **비즈니스 실무 및 윤리**

- **이익 공여**

FR 사업파트너는 FR 그룹의 선물, 접대, 사적인 이익 수령에 대한 아래의 내부 규율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FR 사업 파트너는 FR 그룹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FR 그룹 임직원에게 이익의 제공(제공의 합의 또는 제안)을 하여서는 안 되고, 그들로부터 이익을 수수 하여서도 안 됩니다.

### **“선물, 접대, 이익제공의 금지”**

- (1) 원칙적으로 FR 그룹 임직원들은 어떠한 거래처로부터도 선물 또는 접대 등의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상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이익은 법령 및 일반사회의 상식 범위 내로 하여야 합니다.
- (2) 원칙적으로 FR 그룹 임직원들은 어떠한 거래처에게도 선물이나 접대 등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익을 제공할 때에는 사전에 상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법령 및 일반사회의 상식 범위 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3) FR 그룹 임직원들은 거래처에 대해 부당하거나 반사회적인 금전 리베이트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FR 그룹 임직원 자신 혹은 그 지인에 대한 채용 내지 혜택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이해충돌**

FR 사업파트너는 FR 그룹과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해충돌”이란 둘 이상의 대치되는 이익이 있어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해충돌 또는 이해충돌의 발생은 FR 사업파트너의 임직원이 FR 그룹 임직원과 가족·친족(부모, 배우자, 동거인, 자녀, 형제자매 등)관계인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해관계자는 FR 그룹과의 거래 및 관련 의사결정 업무를 담당해서는 안 됩니다.

## **근로환경 및 인권**

- **아동 노동 금지**

FR 사업파트너는 아동에게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동”은 만 15 세(ILO 협약 제 138 호에 의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만 14 세) 또는 FR 사업 파트너 소재국의 법령에 의한 취업 가능 최저 연령 중 높은 쪽의 연령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FR 사업파트너는 근로자 고용 시 18 세 미만의 근로자에 관한 모든 법령 및 실습생·훈련생에 관한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강제 노동 금지**

FR 사업파트너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부채 상환을 위한 근로, 계약노예, 강제노동, 노예노동, 죄수에 의한 노동, 노예제와 유사한 노동, 인신매매에 의한 노동이 금지됩니다<sup>1</sup>. FR 사업파트너는 채용시 또는 고용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예치금 지불 의무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 **억압 및 학대의 금지**

FR 사업파트너는 모든 근로자를 존중하는 자세로 대우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체벌이나 어떠한 강압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FR 사업파트너는 물리적, 언어적, 정신적 학대 및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차별금지**

인종, 성별, 피부색, 국적, 종교, 연령, 임신, 혼인여부, 사회적·민족적 출신, 성적 기호, 정치적인 견해, 장애, 조합 참여 여부 또는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기타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 **건강과 안전**

FR 사업파트너는 적절한 건강·안전 관리, 건물·소방 및 기계설비의 안전, 안전한 음용수와 적절한 위생시설의 구비,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조합 결성의 자유**

---

<sup>1</sup> FR 사업파트너는 “노예제”, “노예제와 유사한”의 정의로서 “노예제도, 노예거래 및 노예제와 유사한 제도 및 관행의 폐지에 관한 보충조약(1957)”, “인신매매”의 정의로서 “사람, 특히 여성 및 아동의 거래를 방지하고, 억제 및 처벌하기 위한 의정서(2000)”, “강제노동”의 정의로서 ILO협약 제29호를 각각 참조해야 합니다.

FR 사업파트너는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가 처벌, 방해, 억압받지 않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연합하여 조직을 만들고 단체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 **급여와 수당**

FR 사업파트너는 모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 정책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 **근로 시간**

FR 사업파트너는 관련 법령 등에 정해진 근로 시간(초과근무, 휴가 포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환경 보호**

FR 사업파트너는 모든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FR 그룹이 정한 환경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편 FR 그룹에 의한 요구사항은 환경 관련 법령상의 기준보다 엄격할 수 있습니다.

## **정보 및 데이터 관리**

FR 사업파트너는 FR 그룹으로부터 FR 그룹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수령한 각종 정보·데이터(기밀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포함)를 법령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기하여 적절히 관리합니다. FR 사업파트너는 해당 정보·데이터를 제공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또는 수단을 불문하고 공개·누설·매각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본 정책의 준수**

- **문서화와 커뮤니케이션**

FR 사업파트너는 본 정책 상의 모든 요구사항이 준수되기 위한 관리 시스템 또는 사내 규정을 운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모니터링**

FR 사업파트너는 FR 그룹이 본 정책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락을 드리는 경우에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 **시정조치**

FR 사업파트너가 본 정책을 위반했을 경우, FR 그룹과 FR 사업파트너는 타당한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정조치계획을 작성하고 합의합니다. FR 사업파트너가 본 정책을 위반한 경우, FR 그룹은 거래중단을 포함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하청업체**

FR 사업파트너는 FR 그룹사의 생산 주문을 하청업자에게 재위탁 할 때, 재위탁처의 사업 활동이 본 정책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FR 사업파트너의 책임으로 재위탁처로 하여금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FR 그룹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재위탁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명성 및 성실성**

FR 그룹은 FR 사업파트너와의 모든 거래가 윤리적으로 투명하게 수행될 것을 기대합니다. FR 그룹은 뇌물수수, 기록의 은폐 또는 위조, FR 그룹 및 그 대리인의 판단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끝.

FR 사업파트너 회사 대표로서 본인은 본 정책을 읽고 규정 및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였습니다. 본인은 본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FR그룹과의 거래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FR 사업 파트너

명칭:

대표자

직위 및 성명

(인)